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61호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4- 542호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2
공고 의뢰
- 공고 제2014- 543호 공인 신조 공고 4
- 공고 제2014- 5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5
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5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일부개 11
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575호 2014년 제3차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수 15
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 공고 제2014- 577호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6

고 시

- 고시 제2014- 47호 도로명주소 고시 17
- 고시 제2014- 48호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공고 19
- 고시 제2014- 49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2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42호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우리 구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사고 및 범죄이용 가능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코자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03. 14 ~ 04. 02 (20일 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 : 2014. 04. 02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자동차 1대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4년 03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무단방치현장사진

연 번	차량번호	차명	방치기간	방 치 장 소			
2008-481	미상	브로엄	약3개월	운연동 461-2 제2경인고속도로 밑 시흥 경계			
차대번호	소유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사진 촬영일	년식	신고자	신고자 연락처	
각자훼손	미상	미상	08,08,25	미상	서창동 사무소	032-453-5500	

방
치
현
장
(앞)

번호판없음

방
치
현
장
(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43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사유

: 공인 사고(분실)에 의한 신조

○ 신조 공인명 : 신 조(1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비 고
신 조 공 인	구월1동장인 (구월1동민원전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53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 의원면직의 제한사유에 관한 사항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의원면직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32-453-2192, FAX : 032-453-21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붙임)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3. 의견수렴서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3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면직의 제한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의원면직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표준안)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가) 제정 2005. 5.19 지방공무원제도법-7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정한다.

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정 2005. 5.19 지방공무원제도팀-7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정한다.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강연으로 받을 수 있는 강의·강연료의 상한액 기준 마련,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실시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을 정립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강연으로 받을 수 있는 강의·강연료를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로 구분하고 시간당 상한액을 세부적으로 신설(제15조제2항 단서 및 별표 신설)

나.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대상자를 신규임용자 외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까지 확대하여 실시(제22조제2항)

4. 관계법령

○ 「인천시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22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72, FAX 453-2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3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강연으로 받을 수 있는 강의·강연료의 상한액 기준 마련하고
-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실시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부강의 대가 기준 신설(안 제15조제2항)

구 분	구청장	4급(상당) 이상	5급(상당)이하	비 고
상 한 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교육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항)

- 신규자 → 신규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행동강령 규칙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제2항 중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를 “공무원 신규 임용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구청장	4급(상당) 이상	5급(상당)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비고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75호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우리구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4. 3. 20 ~ 4. 4
4. 열람 및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조서
 - 나. 소 유 자

연번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사 유	비 고
1	토지소유자	이씨	남동구 장수동	396-5외 1필지	주소불명	
2	토지소유자	이씨	남동구 장수동	396-5외 1필지	주소불명	
3	토지소유자	이씨	남동구 장수동	396-5외 1필지	수취인불명	
4	토지소유자	원용덕	남동구 장수동	388-16외 1필지	수취인불명	
5	토지소유자	이승창	남동구 장수동	388-16외 1필지	수취인불명	
6	토지소유자	오웅섭	남동구 장수동	388-16외 1필지	수취인불명	
7	토지소유자	오정섭	남동구 장수동	386-12외 1필지	주소불명	

6. 기타

공고문 및 조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77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4. 3. 20. ~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종료시 까지

3. 기 타

- 부의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3)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4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3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25-11외 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20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략(7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략(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3.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8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25-11	20091116	인근지역에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호수,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등의 친환경적 입지를 고려하여 제명	2014.03.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 25-1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1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주차장용지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20	20120328	서창남순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215번길 2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47번길	16	200911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47번길 1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26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7번길	31	200911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57번길 3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1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7-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61번길	20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6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61번길 2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5-1외 4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56	20091116	논현고잔동을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 15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6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1-60	20091116	논현고잔동을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 211-6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1-60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0	2014.03.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149-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4	2014.03.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2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88-2	2014.03.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48호

2014년도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실시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성 제고
- 가축전염병의 발생 미연방지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실시지역 : 남동구 전지역

☐ 실시기간 : 2014. 4. 1. ~ 4. 18. (18일간)

☐ 질병의 종류 및 대상가축

- 소 : 소탄저·기종저,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소설사병
- 돼지 : 돼지열병·단독, 돼지일본뇌염, 돼지유행성설사병
- 개 : 광견병
- 닭 : 뉴캐슬병

☐ 특이사항

-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으로 내방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백신 부족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습니다.

☐ 시술자 : 관내 공개업수의사 22명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덕수동물병원	고 종 길	구월1동 1206-5 1층	467-8575	구월동
쿨펫동물병원	배 병 선	구월1동 1130 홈플러스 지하2층	437-7582	
보람동물병원	문 우 상	구월3동 1394-9	429-1673	
자연동물병원	유 재 현	구월4동 1240-3	468-6406	
다비드동물병원	김 종 한	구월4동 1271-11	464-1475	
주주동물병원	이 재 설	간석1동 343-5	442-9111	간석동
동암동물병원	박 철	간석1동 570-5	437-5535	
24시독스동물병원	김 광 수	간석2동 210-2	432-0075	
도그인동물병원	김 용 희	간석3동 914	433-3440	
세우리동물병원	이 행 숙	간석3동 921-15	463-9066	
마이펫동물병원	박 경 환	간석4동 216-4	428-8275	
젼마동물병원	송 재 근	만수1동 948-4	464-4488	만수동
신진동물병원	황 의 담	만수1동 961-31	463-8801	
좋은친구들동물병원	김 승 곤	만수2동 869-11	469-7782	
신세계동물병원	최 진 하	만수5동 897-2 105호	468-7533	
행복한동물병원	박 신 미	만수5동 916-2	469-7588	
길동물병원	윤 춘 보	만수5동 889-15	467-1275	
만수동물병원	류 태 권	만수6동 1025-11	467-8450	
해맑은동물병원	박 철 병	만수6동 1079-3	469-8275	
에코동물병원	도 래 선	논현동 608-3 선하우스 1층	666-7282	논현동
해피동물병원	이 정 준	논현동 619-15(3B4L) 1층	439-8822	
한화동물병원	안 기 주	논현동 733-5	441-7582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안내

남동구청에서는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접종계획 : 3,480두
2. 접종기간 : 2014. 4. 1. ~ 4. 18. (18일간)
3. 접종대상 : 개(애완견 포함)
4.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5. 접 종 비 : 1,500원
6. 실 시 자 : 동물병원 의사
7. 문 의 처 : 남동구청 농수산개발과(☎453-2700)
8. 동별 실시계획

동 별	예방접종 실시 동물병원명(전화)	비고
합 계	22개소	
구월동	덕수(467-8575), 보람(429-1673), 자연(468-6406), 다비드(464-1475), 쿨렛동물병원(437-7582)	
간석동	24시독스(432-0075), 마이펫(428-8275), 도그인(433-3440), 세우리(463-9066), 동암(437-5535), 주주(442-9111)	
만수동	신진(463-8801), 켄마(464-4488) 신세계(468-7533), 행복한종합(469-7588), 만수(467-8450) 해맑은(469-8275), 좋은친구들(469-7782), 길(467-1275)	
논현동	에코(666-7282), 해피(439-8822), 한화(441-7582)	

주) 1. 각 동물병원에서 선착순 접종하니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은 매년 1회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2. 계획된 사업물량 초과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가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1년이상 보관하고,
반드시 옥내에서 묶어 길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49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남촌동 265-8번지 일원에 신설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가리좌표계	
	X(m)	Y(m)
	별	첨
기 준 원 점 명	지역좌표*계(가리)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65-8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2014년 3월 12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 설(12점)	